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90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유상범·박준태·주진우

박형수 · 조배숙 · 조경태

정점식 · 서명옥 · 엄태영

송석준 • 곽규택 • 김미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나 'n번방' 사건 등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영상물 또는 아동등에 대한 성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허위 영상물이나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범죄에 제공된 수익금 계좌 등을 확보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인 불특정으로 기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범죄수익 환수또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한편,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검

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위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환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큰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독립몰수"란 주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
-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 10. "권리자"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독립몰수·추정) ① 제10조의4 각 호의 죄는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를 할 수 있다.

- 1. 범인이 사망한 경우
- 2.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소재불명 후 6개월 이상 지명수배되어 있는 등 검거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 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③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으로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5조(독립몰수·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 ④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이 수인의 재산권자사이에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재산권자의 보통재판적에 의하되 주된 재산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에의하다.
- ⑤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
- 제16조(독립몰수·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기타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주소, 기타 송달방법
-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1. 추징청구액
-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적용법조
- 4. 피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5. 피청구인의 주소, 기타 송달방법
-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독립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 제19조(청구서 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송달불능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6조의 청구 이후 비로소 피청구인이 특정되거나 송달이 가능하게 된 경우 검사는 즉시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제3항제4호, 제5호의 사항을 보정하고 그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 청구서 및 보정서 부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제2항의 보정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 및 보정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20조(독립몰수·추징의 심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 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심리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 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검사, 피청구인, 변호인 및 참가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불출석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된다.
- 제21조(독립몰수·추징의 명령)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 ②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를 기각한다.
- ④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청구를 각하한다.
- 제22조(특별재심절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 독립몰 수·추징명령을 받은 자, 기타 권리자는 확정된 독립몰수·추징명령 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청구인 또는 기타 권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독립몰 수·추징에 관한 재판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될 때
 - 2. 독립몰수·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
 - ② 제1항제1호의 청구는 청구인이 최종적인 독립몰수·추징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월) 내에, 제1항제2호의 청구는 무죄의 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1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제1항의 청구는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제23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 독립추징과 이에 대한 제3자 참가, 보전절차 및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징절차 및 그 불복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

제24조(위임규정) 독립몰수·추징 청구의 절차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독립몰수"란 주형을 선고하		
	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정을 말한다.		
<u><신 설></u>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		
	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		
	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		
	<u>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u>		
	<u>다.</u>		
<u><신 설></u>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u> <신 설></u>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		
	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u>말한다.</u>		
<u> <신 설></u>	<u>10. "권리자"란 몰수 또는 추징</u>		
	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소유		
	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사		
	람을 말한다.		
<u><신 설></u>	<u>제14조(독립몰수·추징)</u> ① 제10		

조의4 각 호의 죄는 이 법이 정한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하 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몰수 를 할 수 있다.

- 1. 범인이 사망한 경우
- 2. 범인이 국외에 있거나 소재 불명 후 6개월 이상 지명수배 되어 있는 등 검거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3. 범인의 성명은 알 수 없으나 관련범죄와 몰수대상물이 특 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③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상속, 유증 또

는 유류분으로 범인 외의 자에 게 귀속된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몰수 또는 추정할수 있다. 다만,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상속, 유증 또는 유류분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집행할수 있다.

- 제15조(독립몰수·추징의 관할)
 ① 독립몰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다.
 -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 2. 몰수대상재산의 소재지 법원
 - 3. 몰수대상재산 재산권자의 보 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② 독립추징절차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법원이 관할한 다.
 - 1. 관련범죄에 대한 관할 법원
 - 2. 추징을 명할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 호의 관할 법원은 관련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 사 건을 관할할 법원을 포함한다.

<신 설>

④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2 호의 보통재판적이 수인의 재 산권자 사이에 상이한 경우에 는 그 중 주된 재산권자의 보 통재판적에 의하되 주된 재산 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에 의한다. ⑤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거 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제2호의 보통 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 다.

제16조(독립몰수·추징의 청구)
① 검사는 제14조제1항의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몰수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4조제2항의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독립하여 추징명령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① 제16조의 청구를 하려는 때에 는 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명령청구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
- 2.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 3. 독립몰수를 필요로 하는 이 유 및 적용법조
- 4.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 기타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5. 피청구인 및 기타 권리자의주소, 기타 송달방법
- 6.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및 보 전처분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의 추징명령청구서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1. 추징청구액
- 2.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 및 그 적용법조와 죄명
- 3. 독립추징을 필요로 하는 이 유 및 적용법조
- 4. 피청구인의 성명, 기타 피청

<신 설>

<u>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u>
5. <u>피청구인의 주소, 기타 송달</u>
<u>방법</u>

- 6.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의 청구서에는 피청구 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제18조(몰수대상재산의 압수) ① 법원은 독립몰수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제16조의 청구 당시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몰수대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를 하지 아니하고 몰수보전명령을 한다.
- 제19조(청구서 부본의 송달)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서의 부 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특정되

지 아니하거나 송달불능인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6조의 청구 이후 비로소 피청구인이 특정되거나 송달이 가능하게 된 경우 검사는 즉시 제17조제2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호의 사항을 보정하고 그 피청구인 의 수에 상응하는 청구서 및 보정서 부본을 첨부하여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2항의 보정을 한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 및 보정서 부본을 피청구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몰수・추징의 심리)

-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에 대하여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심리할 수 있다.
- ② 검사,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문기일에의한 심문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심 리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검사, 피청구인, 변호인 및 참가인에 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 여야 한다.
- ① 피청구인 및 참가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불출석한 기일의 심리에 기속 된다.

제21조(독립몰수·추징의 명령)

- ① 법원은 제16조의 청구가 이 유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몰수 명령 또는 추징명령을 한다.
- ②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9조제 2항에 따라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한다.
- ③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를 기각 한다.
- ④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아니

<u><신 설></u>

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결로 써 청구를 각하한다.

제22조(특별재심절차) ①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정한 사유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 독립몰수·추징명령을 받은 자, 기타 권리자는 확정된독립몰수·추징명령에 대하여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청구인 또는 기타 권리자

 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독립몰수·추징에 관한 재판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될 때
- 2. 독립몰수·추징명령의 대상이 된 범죄수익에 관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 ② 제1항제1호의 청구는 청구인이 최종적인 독립몰수·추징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재심청구인이 책임을 질 수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월) 내에, 제1항제2호의 청구는 무죄

<신 설>

의 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1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몰수명령 또는 추징명령의 집행을 정지 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의 정지 또는 중단을 명령 할 수 있다.

제23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에 관한 특례법」 등의 준용)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독립몰수, 독립추징과 이에 대 한 제3자 참가, 보전절차 및 국 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 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 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 부터 제78조까지를 준용하고. 그 밖의 독립몰수절차, 독립추 징절차 및 그 불복방법에 관하 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을 준 용한다.

제24조(위임규정) 독립몰수·추징 청구의 절차 등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